NORTH ORANGE COUNTY SPECIAL EDUCATION LOCAL PLAN AREA

BUENA PARK SCHOOL DISTRICT

부모님/ 보호자/대리인에게 보내는 통지서

이 통지서는 귀하의 자녀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특수 교육을 받도록 권고되어 특수 교육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법(IDEA)에 의해 절차상의 완전함을 위해 통보되는 것입니다. 18세가 될 때까지 이 권리를 제공받는 아동들에게 이 통보가 제공됩니다. 이 통보의 목적은 연방과 주 정부의 법에 의하여 장애 아를 가진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권리를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켈리포니아 주에서는 특수 교육은 태어나서부터 21살 사이에 있는 아동들에게 제공됩니다. 연방과 주 정부 법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동들을 평가 절차와 특수 교육 배치의 확인 및 서비스를 통하여 보호해 드립니다. 이 통고서는 매해 귀하에게 드리게 되며 처음 권고를 받았거나 평가가 요구되거나 여러분의 요구에 의해서 항의 접수되었을 때 받으시게 됩니다. 다음의 정의들은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 서술한 것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의들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연방법에 의해 정신적 지체, 청각 손상(농아 포함), 말 또는 언어 손상, 시각 손상(장님 포함), 아주 심각한 정서적 장애(이하 정서 장애), 신체 기형, 자폐증, 사고로 인한 두뇌 손상, 기타 건강 장애나 특정한 학습 장애: 특별 교육과 특별 서비스에 요구되는 위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20 U.S.C. 조항 1401(3).)

평가 라는 말은 여러분의 아동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측정을 통해 여러분의 아동들이 장애 여부와 원인과 교육적 특혜를 받는 것이 필요한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평가의 사용되는 것은 여러분의 아동들을 위해 개별적으로 하며 학교 교육 국의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 시험은 학교에서 모든 아동들이 보는 기초 실력 측정 시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4 C. F. R. 조항 300.530-300.543)

무료로 하는 적절한 공립 교육(FAPE)은 연방법에 의해 특수 교육과 이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1) 공립학교의 감독과 방침 아래 공립 교육비로 충당되며 여러분에게 지불하게 하지 않으며; (2) 켈리포니아 교육부의 기준에 맞게 하며(CED); (3) 개인 교육 프로그램(IEP)을 서면으로 적합하게 제공하며 아동의 발전을 위하여 주 정부의 유아원, 초등학교에 적합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학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공립이 아닌 학교에 갈 수 있게 한다. (20 U.S.C. 조항 1401(9).)

최소로 제한 된 환경(LRE)은 장애 아동들이 최대한으로 비 장애 아동들과 함께 같은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이들을 별도 수업학교로 보내거나 정규 교실에서 분리 할 시에는 장애의 상태가

보조 기구나 서비스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정규 교실에서의 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할 시에만 행해진다.(20 U.S.C. 조항 1401 (a)(5).)

연관된 서비스는 교통편 제공과 함께 특수 교육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장애 아동들을 초기에 장애를 확인하고 장애 상태를 분석하는 것을 포함하여 발전시키고 교정하고 필요한 것을 돕도록 후원하는 서비스들을 의미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은:

1. 말하기 언어 병리학과 청각 학 서비스

2. 통역 서비스

3. 심리학적 서비스들

4. 직업 요법과 물리 요법

5. 레크레이션 치료를 포함시킨 오락

6. 쇼셜 워커 서비스들

7. 회복 카운셀링을 포함한 카운셀링 상담 서비스들

8. 오리엔테이션과 이동성 서비스들

9. 학교 간호사 서비스들

10. 처방과 평가를 위한 목적을 위한 메디칼 서비스 (20 U.S.C. 조항 1401(26).)

특수교육이란 특별히 고안된 지도로써 부모님의 비용 부담 없이 교실, 가정, 병원, 공공 시설 등 다른 환경에서 학습을 포함하여 체육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20 U.S.C. 조항 1401(29).)

교육 기록 열람

연방 가족 권리법과 사생활 보호법 조례(FERPA)에 의해 캘리포니아 교육 법 조항에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학교 교육 국에 등록된 아동들의 부모님들은 아동의 기록들을 검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과 주법에 의하여 장애 아동들의 부모들은(보호권한을 갖지 못하나 다른 권리 제한이 없는 부모를 포함) 장애 확인, 평가, 그 아동의 교육 배치, 무료의 적절한 공립 교육의 제공 등의 모든 교육 기록을 검토 할 수 있고 또한 설명 및 통역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령에 의하여 부모들은 교육 기록을 검토하고 복사 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은 법원에서 학생의 교육적 권리를 맡아서 주관할 관리자를 지정된 아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이 18세를 넘을 경우 권리가 아동에게로 넘어갑니다.

각 학교의 기록의 관리인은 각 학교의 교장입니다. 학군의 기록 보관은 특수 교육부장입니다. 아동의 기록은 학교 또는 학군 사무실에 보관되나 기록 열람의 서면 요청은 학교 또는 학군의 모든 기록을 다 포함합니다. 이 기록의 관리자는 아동의 기록형태와 보관 장소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요청하신다면).

교육 기록 검토나 / 또는 복사 본은 요청을 한 날부터 일하는 날만 계산하여 오(5)일 안에 부모님에게 Buena Park School District. 조사비용과 검색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나 부모님에게 사용이 거부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의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 번 완전한 복사 본을 드렸으나 같은 복사 본을 더 원하실 경우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20 U.S.C. 조항 1232g 34 C.F.R. 조항 99 1-99.67 교육 코드 조항 49060-49079.)

사전 서면 통지서

IDEA는 학군에게 장애자 아동의 부모님께 먼저 아동의 어떤 점을 알아내는 것, 평가를 바꾸거나, 아동의 교육 배치, 공립학교의 무료 교육을 제의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이 분명히 다 이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국어로 제공됩니다. (20 U.S.C. 조항 1415(b)(3).)

미리 보내진 서면 통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학군에서의 제의 또는 거절에 대한 설명
2. 학군에서의 제의 또는 거절에 대한 이유
3. 학군에서 고려하는 다른 선택들과 왜 그 이유들이 거절되었는가에 대한 설명
4. 각 평가 절차, 테스트, 기록들과 제의 또는 거절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학군의 기록들을 설명
5. 학군에서 제의와 거절에 관련된 문제의 요소에 대한 설명
6. 장애 아동들의 부모에게 보내는 통지서가 만약 평가를 위한 처음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면 절차상 보호에 대한 설명, 즉 절차상의 보호에 대한 설명서의 복사 본을 가질 수 있음
7. 이 규정들의 이해를 위해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설명 (20 U.S.C. 조항 1415(c).)

부모님들의 동의서

IDEA는 학군에게 여러분의 아동이 장애라고 판단이 되면 아동을 처음 평가 시작 전에 여러분에게 이 정보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보 동의서라는 의미는 여러분의 아동에 대한 평가와 교육 배치 결정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의는 자발적인 것이며 후에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평가에 대한 여러분의 동의서는 아동의 배치와 특수 교육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군에서는 배치에 대한 동의는 나중에 따로 요구하게 됩니다. 학군은 아동의 재평가를 위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 통보하며 여러분이 그 요청에 동의하시지 않으시면 재평가하지 않습니다. (20 U.S.C. 조항 1414(a)(1)(c) 그리고 1415.)

평가 절차에 대한 보호

연방법은 "평가"라 하고 캘리포니아 주법은 "사정"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학군 직원에 따라 서로 바뀌어져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학군은 특별 교육에 대한 추천을 받은 후 십오(15)일 이내에 서면 분석 계획을 부모님께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십오(15)일 이 내에 이 계획서를 검사하고 동의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동에게 장애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가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학군은 여러분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육십(60)일 이내에 평가를 끝내고 아동의 필요한 교육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기일은 학교 공휴일이나 방학기간 또는 여러분이 아동에 대한 평가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아동이 다른 학군으로 전학을 갈 경우 여러분이나 아동을 받는 학군에서 평가 완료 시간을 동의할 경우 등의 이유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IDEA는 평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학군에서 다음과 같이 하도록 서술하고 있습니다:

1. 부모에게서 온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와 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여 문제가 되는 기능적, 발전적, 학구적 정보를 알아내며 또한 그 아동의 일반 교과 과정의 적응과 유아원 아동을 위해서는 적절한 활동들에 참여시켜 그 나이가 장애자로서 개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2. 한 가지 방법과 판단 기준만을 만을 사용하지 않고 아동이 장애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결정함; 그리고

3. 전문적인 적절한 기구들을 사용하여 인식력과 관련된 분석과 행동 분석을 하고 신체적인 것과 개발 요인을 덧붙인다.

학군은 여러분의 아동에게 적용되는 시험과 평가도구는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두지 않으며 완전히 이해를 하지 않는 한 그 아동의 모국어나 다른 의사 전달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준 시험은 인정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훈련된 전문 지식인이 시행하며 시험 제작 회사에서 지정하는 지시에 따라 행해집니다. 장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분야를 평가받게 되며 학군에서는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 수집된 모든 정보를 평가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아동의 평가가 끝나면 이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아동의 장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애 가능 여부의 평가 보고서와 서류 등의 사본을 받게 되십니다.

장애아동으로 판정 시 읽기 내지 산수 수업의 부족으로 또는 영어 구사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장애 아동으로의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처음 평가의 한 부분으로 (합당하다면) 그리고 재평가의 일부분으로 IEP 팀과 전문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합당하게 다음 사항을 수행할 것입니다:

1. 아동의 평가 데이터를 재검토하고 부모님에게 받은 정보와 평가를 더하여 현재 교실에 준한 평가와 관찰 그리고 선생님의 관찰: 그리고

2. 조사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의 의견을 덧붙이고 덧붙여진 데이터는 무엇인지 알아내고 만약에 있으면 필요한 것을 결정한다:

 a. 아동의 어떤 특정 부분이 장애인지, 혹은 아동의 재평가일 경우 아동의 같은 장애가 지속되는지 그러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b. 현재의 교육 수준 성과와 아동에게 관련된 개발되어야 할 부분

 c. 특수 교육의 필요성과 그에 관련된 서비스 혹은 재평가일 경우 아동이 특수 교육과 그에 관련된 서비스가 계속 필요한지: 그리고

 d. 추가할 것들과 특수 교육을 변화시켜야 할 것들,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가 교육 과정에 아동의 매년 아동의 IEP 에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지의 필요 여부

보통 재평가는 삼 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IEP 팀에서 더 이상 추가 정보가 필요 없거나 아동의 장애 정도가 지속적일 경우 재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면 학군은 이에 대한이 이유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 통보를 받으신 후 여러분은 아동의 재평가를 요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학군은 여러분에게서 재평가 요구를 받지 않을 경우 아동의 재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20 U.S.C. 조항 1414, 1415, 34 C.F.R. 조항 300, 530-300. 543)

여러분의 아동이 더 이상 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고 결정이 나기 전에는 학군에서는 위에 기록한 동일한 평가 절차를 시행하게 됩니다. (20 U.S.C. 조항 1414, 1415 34 C.F.R. 조항 300, 530-300; 교육조항 56321)

독자적 교육 평가

학군의 평가가 완성된 후 아동의 대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독자적으로 아동의 교육 평가를 받고 비용을 학군에 지불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군이 독자적 교육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평가 비용 요구를 청문회 앞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문회 위원은 평가 비용의 적합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학군이 이겼어도 독자적 평가를 하실 권리가 있으시지만 공공 비용으로 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독자적 교육

평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준은 학군의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20 U.S.C. 1415(b) (1); 34 C.F.R. 조항300.502)

학군 평가 절차는 아동의 교실 안의 관찰을 허락합니다. 만약 학군에서 여러분의 아동을 평가 기간 동안 관찰할 경우 학군에서는 독자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개인도 교실 안의 아동을 관찰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만약 학군에서 아동에게 새로운 학교 환경에서의 평가를 제안했으면 독자적 평가 역시 이 새로운 환경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아동을 공립이 아닌 학교에 입학시키고 공공기금으로 공립이 아닌 학교에 배치를 제안했으면 학군은 제안이 된 학교에서 첫 관찰을 해야하며 아동은 제안된 학교에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 조항 56329(d))

IEP 회의

특수 교육을 받는 아동의 부모님이나 법적 보호자께서는 IEP팀의 한 일원이 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IEP 팀이나 개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뜻은 각 장애 아동을 위하여 그들의 발달과 검토와 수정을 연방법과 주법에 의해 문서화합니다. IEP는 아동의 현재 학업 성취 수준과 아동의 기능의 실행과 교육 발전을 위한 부모의 관심들을 고려합니다. 부모나 법적 보호자로서 아동의 학급 배정을 결정하기 위해 모이는 어떤 그룹의 회의든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이 있는 전문인을 아동의 IEP 모임에 동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3-5살 사이 아동의 부모님이시라면 부모님과 학군의 동의 아래 개별적인 가족 서비스 계획(IFSP)에서 IEP를 대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6살이 되면 연방 법은 매년 IEP를 갱신 할 것과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것을 문서화 할 것을 요구합니다. 16살이나 그 이하인 경우 만일 IEP 팀이 적합하다고 결정이 나면 아동을 위한 전환 서비스를 포함한 시기, 정부 기관의 책임 설명서 또는 두 기관을 연결시키는 필요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살이 되기 1년 전에 시작하여 IEP 설명서 안에 아동이 성인이 되었으므로 그 권리가 전환점에 도달하였음을 알려 줍니다. 부모님께서 보호권을 획득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의 임무를 획득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법은 아동이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하며 그들 자신이 직접 교육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의 IEP를 작성하기 위해 우선 IEP 팀은 아동의 행동 때문에 학습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인 행동 개입의 전략을 만들며 그런 아동의 행동에 대처하는 적극적 행동 개입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의 담임 선생님은 IEP 팀의 회원으로 합당한 범위 내에서 아동의 IEP 발전에 참여하며 적합한 결정, 적극적 행동 개입 전략, 그리고 보조 기관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과 프로그램 개정에 학교 직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IEP는 적어도 일년에 한번 재검토하며 일년 목적 달성 결과 여부와 IEP에 적합한 것들 1) 학업 성적 중 일년의 목적에 기대보다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서술하며 2) 재검토를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서술하고 3) 부모님에 의해 알려진 정보를 서술하고 4) 필요하다면 예견되는 아동의

필요성을 서술합니다. 아동의 성적표는 일반 아동들과 같은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IEP 팀 인원들의 해당되는 학과목 또는 관련된 서비스가 회의에서 토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님과 학군의 서면 동의하에 해당 팀 인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IEP 팀 인원은 IEP 회의 이전에 여러분과 IEP 팀 전체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회의에 일부 또는 전체를 참석치 않을 수 있습니다. 매 학년 최종 IEP 회의에서 여러분과 학군에서는 서면으로 동의 할 경우 연간 IEP 회의 변경을 위한 IEP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신에 현재의 IEP를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서류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주 법에 의하면 귀하는 IEP 회의를 녹음기에 녹음 할 권리가 있으며 IEP 팀 회원에게 24시간 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진행 기간 동안에 배치 (반을 옮기지 않을 경우)

장애 아동의 부모님으로써 만약 여러분이 아동의 상태 인식, 평가 또는 배치에 대해 학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 기간 중에 현재 배치 된 반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반을 옮기지 않음). 만약 여러분이 반 배치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학군에서 법원 명령 취득 또는 청문회 담당관으로부터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의 반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처음 학교 입학 할 때 부모의 동의하에 아동은 제반 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일반적인 이 법칙의 예외로서 학군에서는 잠정적 기간동안 여러분의 아동을 대치 교육 장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다음 번 항목인 임시 대치 교육 장소에서 다루어지겠습니다. (20 U.S.C. 조항 1415(j)).

임시 대치 교육 장소

2004년 IDEA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여러분의 아동이 지켜야 할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학군 직원은 여러분의 아동에게 적절한 임시 대치 교육 장소 배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또는 십(10)일 이하의 정학을 (장애가 없는 아동들도 이와같은 대치 교육에 해당됩니다)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군의 직원이 십(10)일 이상의 정학을 주고자 하면 그 규칙을 어긴 아동의 행동이 장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 내려야 합니다. 만약 이 행동이 자기 장애에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발견했으면 장애가 없는 아동들이 받는 절차에 따라 직원이 아동을 처벌해야 합니다. 만약 이 행동이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을 했을 경우 학군에서는 여러분과 IEP 팀의 해당되는 회원들이 아동들의 서류에 있는 IEP를 포함한 교실에서의 관찰, 이것을 결정하게 된 모든 정보를 조사하고 이 사건의 의문 사항이 발생하거나 아동의 장애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IEP 팀이 합당한 이행을 합니다. 만약 IEP 팀이 아동의 장애로 인한 것에 결정됐으면 IEP 팀은 기능 행동 평가를 하게되며 아동을 위해 행동 개입 계획을 이행하고 현재 있는 행동 개입 계획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IEP 팀은 아동을 임시 교육 대치 장소에 사십 오(45)일까지 둘 수 있는데 아동의 장애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됩니다 1) 학교나 학교 부지에서 아동이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무기를 소유하고 학교나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가지고 왔거나 2) 아동의 인지하고 있으면서 학교나 학교 활동 장소에서 학교나 학교 부지에서 불법 약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이러한 것들을 팔거나

권유할 때 3) 학교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아동이 학교나 학교 활동을 하는 동안 학교나 학교 부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의 상처를 주었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아동에 대해 이러한 결정이 정해진 그 날에 학군은 여러분에게 아동에 대해 정해진 결정과 함께 절차 평가 보호서와 함께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배치에 대해 어떤 결정이나 아동의 행동에 대한 어떤 결정을 여러분의 동의하지 않으시면 신속한 소송 청문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부모와 교육국에서 다른 결정이 없는 한 아동은 사십 오(45)일 동안 임시 대치 교육 장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만일 학군에서 아동의 현재의 학습 반 배정이 여러분의 아동이나 다른 아동에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신속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문회 위원이 여러분의 아동이나 다른 아동들이 현재의 배치가 아동이나 다른 아동에게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이 되면 청문회 위원은 여러분의 아동의 임시 대치 교육 장소 배치를 사십 오(45)일까지에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위원은 현재 배치가 아동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아동과 다른 아동에게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힘을 기울였고 또한 임시 배치 교육 장소가 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합니다. (다음 밑의 사항에서 중재와 청문회 절차에 대한 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20 U.S.C. 조항 1415(k)).

부모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사립학교에 보냄

학군에서 아동을 위하여 무료로 합당한 공립 교육을 재공한 한 후에 동의 없이 사립학교에 아동을 입학시켰을 경우 학군은 아동의 교육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군으로부터 사립학교에서 특수 교육을 비롯하여 이에 관계된 서비스에 대하여 돈을 지불 받기 원하면 먼저 학군에게서 이 아동이 합당하게 받을 프로그램이 없다는 동의을 학군으로부터 얻어내고 성립해 놓아야 합니다. 지불이 아마 거절되거나 줄여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만약: 1) 아동을 사립학교로 전학시키기 전 여러분이 참석한 가장 최근의 IEP 모임에서 IEP 팀에 의해 학군에 요청했던 합당한 무료 교육이 거부되어 공립 학교의 비용으로 사립학교에 입학시키겠다는 여러분이 우려한 사실을 통보하였거나 2) 공립학교에서 아동을 옮기기 전 업무 시행 십(10)일 전에 아동을 공립학교의 비용으로 사립학교에 전학시키겠다는 서면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약 학군에서 아동이 공립학교부터 전학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아동 평가를 하기를 원하고 평가의 목적을 알리는 통지를 했으면 여러분은 아동이 이에 응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을 경우 청문회 위원이 여러분이 아동을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동의 없이 옮기신 것으로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법정이나 청문회 위원이 다음과 같은 것 중 하나나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지불이 거절되게 될 것입니다: 1) 글을 읽을 줄 모르거나 영어를 쓸 줄 모를 경우 2) 학군의 배치가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심각하게 해를 입혔을 경우(다음 밑의 사항에서 중재와 청문회 절차에 대한 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20 U.S.C. 조항 14152(a)(10)).

불만에 따른 항의을 제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IDEA의 법안은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의 장애를 알아내고, 평가 혹은 학습 배치, 적합한 무료 공립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불만이 발생하면 항의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항의서는 학군이나 연방 또는 주 정부 등 다음에 나오는 주소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항의서는 사건이 발생한 육(6) 개월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학군은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육십 일 내에 해야 합니다. 학군은 십 오(15)일 안에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하고 여러분은 이 학군의 결정을 캘리포니아 교육구 (CDE)에 상소하실 수 있습니다. 항의서는 직접 CDE에 접수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Buena Park School District
Attn: Michele Mukanos
6885 Orangethorpe Avenue
Buena Park, CA 90620
Phone: (714) 736-4257
Fax: (714) 670-7188

캘리포니아 교육부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721 Capital Mall
Sacramento, CA 95814-4785
미국 교육청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ld Federal Building
50 United Nations Plaza
San Francisco, CA 94102

학군은 만약 불평이 있으시면 학군에 제출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만나 여러분의 염려되시는 점을 조사하여 시간 내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학군은 여러분의 항의을 비밀로 처리합니다. 항의 제기서는 학군 사무실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재와 청문회

IDEA는 주 정부에게 아동의 장애 알아내기, 평가, 그리고 교육 배치나 합당한 무료 공립학교 교육의 청문회의 한 과정으로 중재에 대한 절차를 설립해 놓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FAPE).

여러분의 처음 요구이든 바뀐 요구이든 중재 만이거나 혹은 청문회에 대한 절차이면 아동의 이름, 주소, 생년 월일, 학년 수준,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 부모님들에 대한 정보, 부모님들의 성함, 중재하는 편의 이름, 문제에 대한 사실들, 문제의 해결 제안을 포함하여 문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CDE는 중재 뿐이거나 청문회의 절차의 여러분의 요구를 제기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표본 양식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www.oah.dog.ca.gov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Rev. 2/2008 9

여러분은 중재만 하거나 혹은 항의 절차를 학군에 하셨으면 청문회 행정 사무실에 사본을 다음 주소로 보내셔야 합니다.

행정 청문회 사무실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특수 교육 부 (Special Education Unit)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Sacramento, CA 95833-4231
Phone: (916) 263-0880
팩스: (916) 263-0890

캘리포니아에서 중재는 자발적인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중재를 요구하실 수도 있고 청문회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재 만이라는 뜻은 청문회 절차가 없이 중재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중재만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과 학군은 중재 통보를 받으시고 그 통보 안에 날짜, 시간 그리고 중재 장소와 이 사건을 맡은 중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중재 만에는 참석하지 못 합니다. 학군의 중재 회의 중에 여러분과 학군이 서술한 내용은 비밀 보장되고 청문회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며 모든 사람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중재가 실패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른 청문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절차에 따른 청문회는 여러분과 학군 당국이 문제가 된 특별교육 안건에 대해 증인, 증거 서류, 그리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로의 입장을 주장 할 수 있는 공식적 진행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청문회 기간 중 다시 중재 요청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개최를 위한 항의 신청은 규정 위반이 발생한 지 이(2)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신청을 하셨을 경우 청문회 행정 사무실에서 여러분과 학군에 청문회 개최 일자, 시간 장소 등에 관해 통보를 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청문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항의서 제출 후 십오(15)일 내에 학군에서는 여러분의 항의서 내용에 제기된 사실 내용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IEP 팀 위원들과 여러분이 문제해결을 위한 화의 회의를 개최토록 할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여러분과 학군은 항의내용을 서로 검토하고 학군 자체에서 항의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지 기회가 주어 질 것입니다. 이 화의 회의에는 학군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인물이 참석하여야 하며 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군 측 변호사를 참가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 화의 회의를 위한 변호사 비용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군이 동의치 않는 경우 여러분은 이 화의 회의 개최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이 화의 회의에서 항의내용에 대한 상호간의 중재가 이루어 졌을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화의서에 당사자들이 서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항의서 접수 후 삼십(30)일 내에 항의 사항에 대한 화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개최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되며 이에 관한 진행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청문회에서는 여러분이 항의서에 제기한 사항만 다루어 질 것입니다. 공정한 청문회 담당관이 이 청문회 절차를 진행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호사 및 아동의 장애 내용에 관한 특수한 지식 또는 훈련을 받은 인물을 대동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 제출, 구두 또는 서면 항의,

증인의 대질, 심문, 참석요구 권한과 청문회의 서면 또는 속기록 작성 및 사실과 결정에 대한 서면 평결 권한 등이 있습니다. 적어도 청문회 오(5)일전에 여러분과 학군은 모든 증인과 청문회에서 밝히고자 하는 증거 등을 발표하여야 하며 이는 또한 청문회에서 증거로 채택 될 수 없는 상대에 대한 평가, 증인, 증거물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은 무상공립교육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았는 지의 여부에 따릅니다. 담당관은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고 청문회 행정 사무실 또는 공공교육 담당 주 장학관의 청문회 신청 접수 후 사십 오(45)일 내에 여러분과 학군에 결정 사실을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단지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이루어 진 결정은 여러분이 항의내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과 결정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치 않는 한 최종 결정이 될 것입니다.(20 U.S.C. section 1415(e),1415(f):교육법 56505)

민사 소송

연방 정부 또는 주 법원에 여러분의 아동을 위한 민사 소송을 접수하기 위해선 법을 행사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민사 소송은 기록과 행정적 사본을 법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또 양측에게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유리한 증거를 토대로 결정하기 됩니다. 소송은 미국 지역 법정 또는 오렌지 카운티 고등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소송은 청문회 결정을 받은 날짜로부터 구십(90)일 이내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20 U.S.C. 조항 1415(i));교육법 56505(i))

변호사 비용

미국 지역 법정 또는 오렌지 카운티 고등 법원은 만일 여러분이 직접 소송 청문회 또는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정이 나면 변호에 드는 비용은 지급 받게 됩니다. 또는 여러분의 변호사가 경미하고 비이성적이고 근거가 없는 소송을 제기 하거나 소송과 이에 관련된 행위가 법적 절차 진행을 방해, 불필요한 지연, 또는 진행 비용의 불필요한 증가를 발생시킬 경우 학군의 변호사에게 변호 비용이 지급됩니다. 이 비용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지역의 일반적 비용 액에 근거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청문회가 열리기 십(10)일 전에 문서로 해결하여 취소되고 만일 법원 또는 청문회 위원이 결말 짓는 것이 여러분에게 문서로 제외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변호 비용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화해보상금을 거절하거나 학군이 이유 없이 기간을 오래 끌 경우 변호 비용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유 없이 긴 시간을 끌거나 터무니없는 비용을 청구할 때 변호 비용 또는 그에 관련된 비용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IEP 회의에 참가한 변호 비용은 이 회의가 행정적 절차 또는 법적 행위, 중재 내지 화의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0 U.S.C. 조항 1415(i)(3)).

북부 오렌지카운티 특수교육 로컬 계획 지역
부 에 나 팍 교 육 구

공공 혜택이나 보험의 이용에 관한 학부모의 제반권리에 대한 통보서

귀하는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에 의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아이의 학부모, 법적 보호자, 대리 부모이거나, 법정으로부터 위임된 성인으로서 이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IDEA는 교육구에게 귀하의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연관된 서비스의 비용 상환을 위해 귀하 자녀의 공공 혜택(즉, 메디칼Medi-Cal)이나 보험의 이용을 시도하기 전에 귀하의 제반권리와 보호사항에 관한 통보서(Notice)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통보서는 교육구가 귀하 자녀의 공공 혜택이나 보험의 이용을 처음으로 시도하기 전, 그리고 그후 매년 귀하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귀하의 서면 동의를 얻은 후, 교육구는 캘리포니아의 메디칼 프로그램이나 개인 보험과 같은 귀하 자녀의 공공 혜택이나 보험 프로그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IDEA에 의하면 교육구는 귀하의 자녀가 무료로 제공되는 적절한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받는 조건으로써 귀하에게 공공 혜택이나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귀하에게 디덕터블(deductible)이나 코페이(co-pay)를 직접 지불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공공 혜택이나 보험 프로그램에 의한 귀하 자녀의 혜택 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초래할 때 자녀의 혜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혜택 이용으로 인해 일생 동안의 보험 혜택이나 그외 다른 보험 혜택이 줄어들 경우; (2) 자녀가 수업날 외에 받아야 할 서비스가 있으며 교육구의 혜택 이용 때문에 그 서비스의 비용을 귀하가 직접 부담해야할 경우; (3) 보험료를 올라가게 하거나 공공 혜택, 또는 보험을 중단시킬 경우; (4) 가정이나 지역사회를 토대로 하여 건강에 연관된 전체 비용에 대해 제공 받는 면제 혜택을 잃게 할 수 있을 경우. (34 CFR 300.154(d)(1)(2)(i)-(v) 와 (e)조항.)

<u>귀하의 제반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u>:

- 교육구가 비용 청구를 위해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 educational programs/IEP)이나 평가 보고서와 같은 귀하 자녀의 신분 확인 정보를 메디칼, 다른 공공 혜택, 보험 프로그램, 또는 개인 보험에 공개하도록 허락하는 동의를 자발적으로 할 권리.

- 가정 교육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FERPA; 미국법 타이틀 20, 1232 (g) 조항, 연방 규정 파트 99 타이틀 34)과 IDEA(미국법 타이틀 20, 1400조항), 연방 규정 파트 300 타이틀 34)에 의거한 귀하의 제반권리에 따라 귀하 자녀의 신분 확인 정보를 메디칼, 다른 공공 혜택, 보험 프로그램, 또는 개인 보험에 공개하도록 허락하는 동의를 **<u>아무 때나</u>**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비용 청구를 위해 귀하 자녀의 신분 확인 정보를 메디칼, 다른 공공 혜택, 보험 프로그램, 또는 개인 보험에 공개하도록 허락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

- 비용 청구를 위해 귀하 자녀의 신분 확인 정보를 메디칼, 다른 공공 혜택, 보험 프로그램, 또는 개인 보험에 공개하도록 허락하는 동의을 취소하거나 거부하여도 **귀하의 개인 비용 부담 없이** 귀하의 자녀가 계속해서 FAPE를 받게 하는 권리.

만약 귀하가 귀하 자녀의 특수교육 및 연관된 서비스의 비용 상환을 위한 메디칼, 다른 공공 혜택, 보험 프로그램, 또는 개인 보험의 이용을 허락하는 동의를 취소하거나 거부하여도 교육구는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특수교육 및 연관된 서비스가 **귀하의 개인 비용 부담 없이** 계속해서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